당진시 고시 제2016- 110호

##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과 사고 방지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16. 07. 06.

# 당 진 시 장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35조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의 낚시 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 어선업을 신고한 자(이하 "낚시어선업자"라 한다)와 선원 및 낚시 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영업시간)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한다)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. 단,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

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낚시어선은 출·입항 기준으로 하절기(4.1~10.31) 04:00~20:00까지, 동절기(11.1~3.31) 05:00~19:00까지로 하며, 다른 법령에 항해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.

제4조(운항횟수)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운항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한다. 단, 해상좌대낚시터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단지 승객을 해당 낚시터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②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・출항을 하여야 하며 야영하면서 낚시 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.

제5조(영업구역)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, 해사안전법, 항만법,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의 법률(개항질서법)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
- 2.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(경기도·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제외한다)
- ②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서, 갯바위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할 수 있으나 갯바위는 난지섬 부근으로 제한한다.

단, 1회차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1회차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남아있을 경우 2회차 승객수는 낚시장소에 남아있는 승객수와 2회차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 할 수 없다.

**제6조(안전운항 준수사항)**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

- 2. 정원초과승선 금지,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, 낚시어선에 승선원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 동의 착용법을 출항전 교육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 시킬 것(별표1 참고)
- 3.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 및 위험한 장소등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되며, 출·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4.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(선주·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)를 유지하고,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
- 5.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 전서 경찰관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할 것
- 6. 다른 시·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·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령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
- 7.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·분뇨·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,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
- 8. 강풍, 풍랑, 해일,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 시계(視界)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, 그 밖의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
- 9. 음주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
- 10.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,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11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서, 갯바위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태우고 입항하여야

하다

-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2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3.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
  - 4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·채취금지 기간, 체장·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  - 5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6. 영업시간외 항행,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7. 해상사고(추락 등) 예방을 위해 지나친 음주, 가무행위
- ③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 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고발생의 보고)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·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·군수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전 종전 「낚시어선업법」,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의해 제정된 「낚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」(당진군 고시 제2008-100호, 2008.5.21., 당진시 고시 제2013-236호, 2013.4.1., 제2016-039호, 2016.3.8.)은 폐지한다.

#### [별표 1]

###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(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)

- 1. 게시판의 제작기준
  - 가. 재질: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
  - 나. 색상
    - 1) 글씨: 검은색
    - 2) 바탕: 승선정원 흰색

승객 준수사항 - 노란색

- 다.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: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,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아래 (게시방법의 예시)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
- 2.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낚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

#### 【게시방법의 예시】

승선정원 : 00명

### 승객 준수사항

- ※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
  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
 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
 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  - 1.
- 2.
- 3 ·
- •

###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

# 승선정원: 00명

##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

『낚시 관리 및 육성법』제35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.

- ①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  - 2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 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3.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
  - 4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·채취 금지기간, 체장·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
  - 5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 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
  - 6. 영업시간 외 항행,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  - 7. 해상사고(추락 등) 예방을 위해 지나친 음주, 가무행위
- ②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한다.
- ③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